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22

발의연월일: 2024. 6. 20.

발 의 자: 강대식 · 구자근 · 안철수

권영세 · 이종배 · 강승규

김예지 • 신동욱 • 조지연

배준영 · 김용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과 사회진로를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관계기관과의 연계 사업 추진에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입영 전부터 전역 후 사회진출까지 병역이행 단계별 모든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지원을 위해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병역과 사회진로 연계 강화를 통한 청년의 안정적 사회 진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5 신설).

법률 제 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장에 제8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5(병역의무 이행의 지원) ① 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의준비, 병역의무 이행 후 사회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전공·적성 등을 고려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자 지원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제82조의5(병역의무 이행의 지원) ① 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 |
| | 는 정무의무사에 대하여 정무 의무 이행의 준비, 병역의무 이 행 후 사회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 |
| | 의 전공·적성 등을 고려한 상 담,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제1항 에 따른 병역의무자 지원에 관 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병 |
| | 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